

제303회 정례회
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최기찬 의원 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최 기 찬 의원
(더불어민주당, 교육위원회)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최기찬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,
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
학교민주시민교육에 민주화운동의 역사교육을 포함하여
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
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이를 위해

안 제5조제7호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‘광복
이후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역사’를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